

2024년도 서초여성 채움 프로젝트 공모사업 공고문

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는 서초여성의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‘서초여성 채움 프로젝트’ 를 진행합니다. 다양한 모임,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1 공모개요

- 신청자격** : 소모임을 넘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단체(3인 이상)
 -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서초구에서 근로하는 자, 서초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자
- 공모내용** : 서초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등 자유주제의 구민 참여형 사업 운영

<공모 예시>

- 서초구 내 양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
-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
- 여성의 자기돌봄 워크숍
- 여성의 건강과 힐링

2 지원내용

- 사업기간** : 2024. 4.(협약체결일) ~ 10.18.(금)
- 지원내용** : 사업별 최대 250만원, 최대 4개 단체 지원
 - 기관의 직접 집행방식 (사업 후 정산보고서 없음)
 - 사전검토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 및 결정
 - 예산 항목은 별첨파일 참고

3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4. 2. 23.(금)~ 3. 19.(화)까지
- 신청대상 : 서초구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활동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및 단체
(서초구민이거나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자)
- 신청방법
 -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
 - 이메일 : sechoequal@naver.com
 - ※ 접수 시, 제목 [채움프로젝트] (모임/단체명) 지원
본문에 '모임/단체명, 담당자 성명(활동명), 연락처' 기재 후 발송
- 제출서류
 - 필수 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단체소개서, 회원명단,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
 - 선택 : 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(등록단체의 경우)
- 제한사항 : 타 기관의 지원 및 보조금을 받는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

제외대상

- ①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,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·단체
- ②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
- ③ 유사단체 (인적·물적 구성의 유사)의 이중 신청
- ④ 선정 법인(단체)과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법인(단체)
- ⑤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- ⑥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업

4 선정방법

□ 선정방법

- 심사방법 : 외부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선정

□ 선정기준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비율
사업 적정성	-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- 사업의 독창성과 효과성	30
사업 수행능력	- 신청 주체의 활동(사업) 수행 역량 - 사업추진 인력 확보 - 해당 분야의 사업 수행 경험 등 전문성	20
발전 가능성	- 사업의 자치구 내 확산 가능성 정도 - 사업의 효과성	20
사업 성인지성	- 성인지 관점 반영 여부, 성평등 의식 확산 기여도	20
예산 적정성	- 예산편성 계획, 사용의 타당성	10
총점 100점		

□ 선정발표

- 일시 : 2024. 4. 8.(월) 예정
- 방법 : 홈페이지 공지, 개별 문자 안내

5 실행내용

□ 컨설팅 및 세부실행계획서 제출

- 선정 후 단체별 세부실행계획서 제출 : 2024. 4. 19.(금)까지
- 센터의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

□ 오리엔테이션

- 일시 : 2024. 4. 23.(화) 예정
- 장소 :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강의실
- 내용 : 사업 실행관련 교육 및 안내(회계 지침, 질의응답 등), 역량강화 교육
- 참여단체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 진행(필수참석)

사업수행

- 기간 : 약정 체결일부터 10. 18.(금)까지
- 사업수행 기간 중 사업 모니터링 진행(단체별 1회 이상)

결과보고서 제출

- 기 한 : 2024. 11. 1.(금) ※기한엄수
- 제출서류 : 단체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, 회계 증빙자료
-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 및 방문접수(출석부 등 일부 서류 원본제출 必)

성과공유회

- 일시 : 결과보고서 제출 후 11월 중
- 장소 :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강의실
- 내용 : 참여 단체별 사업성과 발표 및 단체 교류

6 유의사항

-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 시 신청서 상의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 원칙입니다.
- 지원금액 결정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
-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.
- 문의 : 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 02-522-0292 / seochoequal@naver.com
(평일 10:00~18:00)

7 회계처리 지침

- 지원금 집행방식
 -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지출
 - 모든 지원금은 센터에서 직접 집행(항목별 월 1회)
 - 매월 1회 필수 지출증빙 자료 제출 시, 7일 이내 센터에서 집행
(사업 후 정산보고서 없음)

지출불가 항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, 회의참석비, 상근직원 인건비 ② 시설비·수선비·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③ 사무실 관리비(전기, 전화, 수도, 임대료 등) ④ 비품, 사무용집기 등 자산구입비, 차량유지관리비 ⑤ 시상금, 수수료, 성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

첨부1 항목별 예산기준

[1] 강사비

항목	세부내용	
강사비	내 용	-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강사비
	기 준	- 지급기준에 따른 경력별 차등 지급 - 지급기준은 첨부2 참고
	증빙자료	- 강사이력서 - 강의계획안 - 강사료 지급조서 - 강사 신분증 및 통장사본

[2] 대관비

항목	세부내용	
대관비	내 용	-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- 행사장, 작업장 등 -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 비용
	기 준	- 자가건물 임차 불가
	증빙자료	- 견적서 -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, 세금계산서 - 임차물 현장사진

[3] 홍보비

항목	세부내용	
홍보비	내 용	-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- 배너, 현수막, 리플릿 등 실사출력물 제작비
	기 준	-
	증빙자료	- 견적서, 시안 -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- 세금계산서 - 1회에 30만원 이상 지출 시 비교견적서 필요

[4] 재료비

항목	세부내용	
재료비	내 용	-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 구입
	기 준	- 상품권, 시상금 등 현금성 상품 편성 불가 - 온라인 구입만 가능
	증빙자료	- 견적서 또는 온라인 구매사이트 캡처 - 물품구입신청서 - 물품 수령 사진 및 사업 현장 사진

[5] 식비 및 다과비

항목	세부내용	
식비 및 다과비	내 용	- 교육·세미나 등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
	기 준	- 내부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행사에는 집행 불가 - 다과비 1인 1회 4,000원, 식비 1인 1회 8,000원 - 동일한 행사에서 식비와 다과비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- 온라인 구입만 가능 - 사업비 총액의 10% 이하
	증빙자료	- 견적서 또는 온라인 구매사이트 캡처 - 물품구입신청서 - 참여자 명단 및 현장 사진

첨부2 강사로 지급기준

(단위 : 만원)

등급	지급기준(만원)		적용대상(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)	
	최초 1시간	초과 매시간	일 반	공직자 등
1급	25	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◦ 전직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 ◦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(급) ◦ 유명 예술인·종교인,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◦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, 중역(대표 또는 석사 학위 소지 이상) ◦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의사, 기술사,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◦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◦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 ◦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4급 이상 공무원 ◦ 지방의회의원 ◦ 대학의 교수 ◦ 학교법인 대표 및 각 급 학교의 장 ◦ 공직유관단체 임원 (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) ◦ 언론인
2급	15	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◦ 중소기업 임원급,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 ◦ 연구기관의 연구원 ◦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,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급 이하 공무원 ◦ 대학의 강사 등 ◦ 학교법인 직원 및 각 급학교의

			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◦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◦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◦ 원어민 어학 강사(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,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)	교직원 이상 ◦ 공직유관단체직원
3급	10	5	◦ 외국어, 전산 등 강사,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(외부경력 포함) 또는 3년 이상(여성가족플라자 경력) 강의 경력자 ◦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	◦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
4급	8	4	◦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 소양 강사	
5급	6	3	◦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	

※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「공직자윤리법」 제 3조의 2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

※[청탁금지법]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

※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, 「청탁금지법」 과 「같은 법 시행령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

※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(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)는 대학(교)의 교수 기준 적용

※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

※강의 시간 산출 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,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(30분 미만은 강의 시간에 미포함)

※2024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 기준 적용

※ **단체 내부 구성원 지급 불가**

※ 이력서 등 등급 증빙서류 필수 첨부

※ 강사료는 원고료가 포함된 금액임